

의안번호	2220061
의 퇴 인	임종득의원
회 답 일	2026.09.03.
추계번호	26C364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2 신설 (폐교별 활용계획의 수립 등)	시·도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따라 폐교가 된 개별 학교의 활용계획(이하 “폐교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교 활용계획은 폐교가 된 후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시·도 교육감은 폐교 활용계획에 따라 폐교가 활용되고 있는 지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제2항).	
		시·도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하는 폐교(이하 “장기 미활용 폐교”라 한다)를 별도로 관리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하여는 폐교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이하 “재수립”이라 한다)하여야 한다(제3항).	
		시·도 교육감은 폐교 활용계획 수립(재수립을 포함한다)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협력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폐교 활용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시·도 교육감은 장기 미활용 폐교를 청년 창업을 위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의 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미활용 폐교를 제5항에 따라 공익목적의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장기 미활용 폐교의 시설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미활용 폐교가 제5항에 따라 공익목적의 시설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지 사용허가·대부 등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7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의2 신설 (폐교별 활용계획의 수립 등)	○ (미대상) 제1항 내지 제3항은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①개별 학교의 폐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②정기적으로 폐교 활용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며, ③조사 결과 5년 이상 미활용된 폐교에 대해서는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함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의2 신설 (폐교별 활용계획의 수립 등)	○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¹⁾는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교재산 실태조사, 관리계획,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시·도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1년²⁾ 또는 3년³⁾ 주기의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조사 등은 기존 인력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 ○ (제4항 내지 제6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 (미대상) 제7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절차 간소화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선언적·권고적 규정으로, 행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와 무관함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①개별 학교의 폐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②정기적으로 폐교 활용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며, ③조사 결과 5년 이상 미활용된 폐교(이하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는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함
- 또한, 시·도교육감이 ④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폐교 활용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⑤장기 미활용 폐교를 공익목적 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⑥소요 비용 지원 및 ⑦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3)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의2제4항) 개정안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폐교 활용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위촉위원에 대한 참석 수당 지급, 회의 운영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시점에서 협의체의 구성 여부, 안건의 수 및 회의 횟수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⁴⁾를 통해 개정안의 협의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폐교재산활용위원회,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4조의2제5항 및 제6항) 개정안 시행으로 장기 미활용 폐교가 공익목적 시설로 활용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공익목적 시설의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단가 및 비용 지원 범위의 구체적인 사항이 불확실하며, 교육용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⁶⁾하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 순증가분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제6조(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촉진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교육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해당 자치구청장,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